

예 산 총 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27,481,696	9,824,451
일반회계		291,095,904	8,732,877
특별회계		36,385,792	1,091,574
기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36,385,792	1,091,57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155,899	94,677
	수질개선특별회계	16,797,593	503,92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65,000	19,950
	의료급여특별회계	154,713	4,641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2,933,870	88,016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400,000	12,000
	농공단지관리특별회계	5,851,162	175,535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4,300	429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3,870,000	116,100
	기반시설특별회계	189,000	5,670
	지역발전특별회계	2,354,255	70,62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531,365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